

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통보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우리시 하천구역 내「하천법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파 주 읍 장

1. 공 고 명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8. 21. ~ 2026. 9. 4. (14일간)
3. 공고장소: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법적근거: 「하천법」 제33조 및 제6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5. 공시송달 대상: 붙임 참조(위치도 및 현장사진)
6. 유의사항
 - 가. 공고내용에 불복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「하천법」에 따른 원상회복통보, 사법기관에 고발,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 - 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, 효력이 발생합니다.
7. 문 의 처: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(☎031-940-8507)

붙임1 공시송달 공고 대상

연 번	위 치	하천명	행위자		위반사항
			성 명	주 소	
1	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165-2번지 일원	동문천(지방하천)	미상	미상	토사 불법 반입·적치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


현장사진1



현장사진2

